

수의회약내역 공개서

□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(2010년 5월 / 수의회약②)

사 업 명	의회 청사 기계실 철거 공사				
계 약 개 요	계약일자	계약기간	예정가격 (또는 예정금액) (A)	계약금액 (B)	계약율(%) (B/A)
	2010.05.24	2010.05.24 ~2010.06.22	16,478,000원	15,480,000원	93.9%
계약상대자	업 체 명	대 표 자	주 소		
	연희토건(주)	장 인 한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-225 2층		
수 의 계 약 사유	○ 수의계약 사유 :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보다 공가의 단축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함. ○ 수의계약 근거 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호 (5천만원 이하 용역) 및 동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규정 (2천만원 이하 용역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) →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(행안부 예규 제178호 → 2천만원 이하 용역 수의계약 가능)				
사 업 내 용	○ 기계설비 철거 - 보일러, 냉동기, 냉각탑, 공조기, 각종 배관설비 등				
기 타					